



## 뉴욕주 EIC(근로소득 세액공제)에 대한 간단한 소개

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연방 EIC 자격이 있으며 EIC를 신청한 경우
- 세무양식 IT-209(영어버전만 이용가능)를 사용하여 **Noncustodial Parent New York State Earned Income Credit**(자녀 비양육 부모에 대한 뉴욕주 근로소득 세액공제)를 청구하지 **않은** 경우

연방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IRS EITC 웹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.

### 공제액은 얼마입니까?

공제액은 연방 EIC의 30%에서 요청한 가계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됩니다.

본 공제의 신청이나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세무양식 IT-215, *Claim for Earned Income Credit*(근로소득 세액공제 신청) 및 해당 지침사항을 참조하십시오(영어버전만 이용가능).

### 자료보관 의무사항

본 공제를 요청할 경우 납세자는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. 본 공제 요청을 위해 1년 동안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자영업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.

- 날마다의 사업 소득 및 사업 지출내역을 보여주는 장부 및 기록문서 기록문서에는 **반드시** 총 소득, 사업 지출액 및 자산과 재고자산의 구입가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현금 영수증, 은행 명세서, 입금 전표, 지불완료 수표, 상업송장,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1099-MISC 양식과 같이 장부의 각 항목들에 대한 입증 문서

자료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자료보관 의무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양식 DTF-215, *Recordkeeping Suggestions for Self-employed Persons*(자영업자에 대한 자료보관 제안사항)를 참조하십시오(영어버전만 이용가능).

**참고:** 본 공제세액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납세자가 1년 내내 뉴욕주에 거주했어야 합니다.